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8. .
제 출 자 : 성주군수 (인)

1. 개정이유

개정된 병역법('01.12.29. 법률 제6547호)이 '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에서 수행하던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제2항제2호 총무과 23번 분장사무 중 병무업무를 삭제한다.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4. 참고자료

○ 병역법 개정에 따른 시·군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관련 통보
(행정12200-11035, '02. 6. 17)

○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총무과 분장사무 중 23) "병무업무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"을 "방위지원본부 운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·과의설치) ① (생략)	제3조(실·과의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실·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 2. 총무과 1)~22) (생략) **23)병무업무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** 24)~29) (생략)	②..... 2. 1)~22) (현행과 같음) **23)방위지원본부 운영** 24)~29) (현행과 같음)